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회사에 제출 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 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 외 유용 1차 적발 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 제2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회사는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 제5조 [비용의 부담]

- ①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본인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근저당설정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발생 시 회사 부담
  2.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발생시 본인 부담
  3.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발생시 본인 및 회사가 각 50%씩 부담
- ④ 근저당말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6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약정서상 본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및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제공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즉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 담보는 대출개시일 전에 회사에 제공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완료일까지 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동 보험가입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비용부담의 주체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니다.

### 제7조 [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하다.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③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인이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부속하는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본인과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부속하는 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본인은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회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자료를 회사의 요청이 있는 대로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 ① 회사는 이 약정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사전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금리인하 요구권]**

- ① 본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본인은 회사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 하는 등 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서면에 의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별도협의]**

이 약정과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 특 약 사 항 -